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4. 12. 19.(금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7일

-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장회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개정('14. 5.28. 공포)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

6조부터 안 제12조까지)

-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, 신청, 교부결정, 교부방법 등 의 절차를 정함(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)
-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,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(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)
-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(안 제27조)
-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, 보조사업 내용 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)
-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보조금에 관한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1조 및 안 제32조)
-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박준순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'15. 1. 1 시행)에 따라 각 자치 단체의 조례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안행부 훈령)」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, 지방보조사업의 수 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, 기존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개정된「지방재정법」에 맞도록 적용,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보전을 위해 규정되었 던 차등보조율 적용 조항을 본 개정안에서 삭제한 사유에 대해

설명이 필요하며,

- 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은 '보조금심의위원회'의 사전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안 제15조(시·군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)에서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도지사의 재량으로 위임한 바, 이에 대한 검토, 수정이 필요함.
- 또한,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 및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안 제31조의 지 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범위는 법률의 위임을 넘어섬. 따 라서, 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8제7항에 위임된 수준으로 제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**토론요지**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- 7. 수정안 요지
 - **발의일자 및 발의자** : 2014. 12. 17. 박한범 의원
 - 수정이유
 - 기준보조율 관련 단체장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, 법률위임 없는 제재조항을 수정하기 위함.

- 주요 수정내용
 - 기준보조율 규정 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15조)
 -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범위 조정(안 제31조)
- 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1부.
 -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제93호

제안년월일: 2014. 12. 1.(월) 제 안 자: 충청북도지사

□ 수정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은 '보조금심의위원회'의 사전 심의 대상인 바, 기준보조율을 사전심 의토록 명시하고, 법률위임 없는 제재조항을 수정하기 위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"충청북도지사" 약어 표기를 안 제5조에서 제4조로 이관함.
- 안 제13조제1항의 "충청북도"를 약어표기 규정에 따라 "도"로 수정 표기함.
- 기준보조율 규정 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(안 제15조)
-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범위 조정(안 제31조)

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

- 안 제4조 본문 중 "충청북도지사"를 "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 "라 한다)"로 한다.
- 안 제5조제1항 중 "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 "라 한다)"를 "도 지사"로 한다.
- 안 제13조제1항 중 "충청북도에서"를 "도에서"로, "충청북도"를 "도"로 한다.
- 안 제15조제1항 중 "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"를 "기준 보조율은 <u>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규칙으로 정한 다."로 한다.
- 안 제31조 본문 중 "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"를 "제28조제2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<u>충청북도지사</u>	제4조(보조대상 사업) <u>충청북도지사(이</u>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<u>하 "도지사"라 한다)</u> 는 다음 각
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	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
조할 수 있다.	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	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
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	① 도지사
<u>한다)</u> 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	
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	
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	
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	
성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	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
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	①
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	
사업에 대하여 매연도마다 해당연	
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	
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	
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	
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	
<u>충청북도에서</u> 발행하는 공보나 <u>충</u>	도에서
<u>청북도</u>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	<u>도</u>

고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시・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제15조(시・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 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 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 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 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 한다. 로 정한다. ② (생략) ② (생 략) 제31조(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제31조(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 -----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

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 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지방보조금"이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,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과 시·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위하여 교부하는 자금)을 말한다.
- 2. "지방보조사업"이라 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지방보조사업자"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- 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보조대상 사업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,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 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
 -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한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
 -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"법"이라 한

- 다)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 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당연직 위원 : 기획관리실장, 안전행정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
- 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 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서, 특정 성의 구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된다. 단,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 내용과 사업자를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
- 3.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4.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는 조례에 대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32조에

따라 지방보조금을 수반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

- 5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
- 6.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,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 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 - 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 - 3.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9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

- 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0조(의견청취 등)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 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 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

- 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 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

-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 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 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보조신청)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 - 2.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 - 3.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
 - 4. 자기자금 부담액(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)
 - 5. 보조사업 기간
 - 6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 -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
 - 2.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
 - 3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
 - 4.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
 - 5.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
 - 6.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,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
 - 7. 지방보조사업의 효과
 - 8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
 - 9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, 첨부 서류,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15조(시·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.
- 제16조(보조금 예산의 통지) 실·국·본부·원장·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·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명세를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교부결정)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.
 - 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
 - 2.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
 - 3.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
 - 4.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용도 및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등의 경영실태
 -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법인·단체 및 개인의 보조사업자로 한정한다.
- 제18조(교부조건)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- 제19조(교부결정 통지)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.
 -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20조(교부방법)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,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. 다만,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 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 부할 수 있다.
- 제21조(용도 외 사용금지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 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 및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2조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

- 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- 제23조(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인계,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.
- 제24조(실적보고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

치를 명할 수 있다

-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
- 제25조(정산검사)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,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.
- 제26조(지방보조사업의 신고)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
 - 2.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
 - 3.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
 - 4.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
 - 5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
- 제27조(성과평가)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④ 성과평가의 시기·대상·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·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28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도지 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교부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4.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 - 5.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 - 6.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7.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정산검사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

-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-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-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 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형식의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,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 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. 다만,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)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, 성과평가 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

-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,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.
- 제31조(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 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.
- 제32조(이의신청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조 건, 교부결정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,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 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- 제3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」(충청북도 조례 제3566호, 2013.6.28)는 폐지한다.
- 제3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6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③ 「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 - 제9조제3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④ 「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20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⑤ 「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 - 제8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

조례」"로 한다.

- ⑥ 「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 - 제6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"로 한다.
- ⑦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9조제4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⑧ 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⑨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19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3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4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⑩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- ③ 「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- ⑤ 「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(b) 「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① 「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(B) 「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- (19) 「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9조 중 "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8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5조제3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④ 「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6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- ②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8 「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중 "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③ 「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6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③ 「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11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② 「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10조제2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

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③3 「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4항 중 "「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」"를 "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 - 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-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지방보조금(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지방보조사업(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격, 지방보조사업자(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1.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
 - 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
 - 3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에 따라 지 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
 - 4.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
 - 5.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
 -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다르게 규정된 경우
 - 2.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시행일: 2015.1.1.] 제32조의2

- 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[시행일 : 2015.1.1.] 제32조의3

- 제32조의4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시행일 : 2015.1.1.] 제32조의4

- 제32조의5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[시행일: 2015.1.1.] 제32조의5

- 제32조의6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 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.
 - 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 - 2.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 - 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[시행일 : 2015.1.1.] 제32조의6

- 제32조의7(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[시행일 : 2015.1.1.] 제32조의7

- 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 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 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

통지하여야 한다.
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 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5.28.]

[시행일: 2015.1.1.] 제32조의8

- 제32조의9(재산 처분의 제한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(이하 "중요재산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,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
 - 2. 양도, 교환 또는 대여
 - 3. 담보의 제공
 -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 - 1.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
 - 2.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14.5.28.]

[시행일 : 2015.1.1.] 제32조의9

- 제32조의10(이의신청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, 교부조건, 교부결정의 취소,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,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[시행일: 2015.1.1.] 제32조의10

- 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- 1.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)
- 2. 재무제표
- 3. 채권관리 현황
- 4. 기금운용 현황
- 5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6. 지역통합재정통계
- 7.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- 8. 중기지방재정계획
- 9.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- 10.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11.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12.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- 13.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- 14.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- 15.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
- 가. 교부현황
- 나. 성과평가 결과
- 다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
- 라.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
- 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
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"는 "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"로 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이내에 지방의회와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5.28.]

[시행일 : 2014.11.29.] 제60조

□ 지방자치법

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